



COVID-19 산업별 지침: 야외 박물관 및 갤러리

2020년 7월 29일

covid19.ca.gov



개요

2020년 3월 19일,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 담당관 및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부 디렉터는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캘리포니아주 시민들에게 자택 체류 명령을 내렸습니다.

COVID-19가 캘리포니아주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완전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알려진 질병은 매우 경증(일부 사람은 증상이 없음)에서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질병까지 이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과 심장 질환이나 폐 질환, 당뇨병과 같은 중대한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비롯한 특정 집단은 입원 및 심각한 합병증을 겪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감염자에게 증상이 없거나 아직 증상이 발현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하였거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함께 있는 경우 전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중요 인프라 업계 직원들을 비롯하여 산업별 또는 직업 그룹별 COVID-19의 감염자 수와 비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현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 직장에서 다수의 감염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는 직원들이 COVID-19에 감염되거나 이를 전파할 위험에 처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장의 예로는 병원과 장기 요양 시설, 수감 시설, 식품 제조, 창고, 육류 가공 공장, 식료품점이 있습니다.

자택체류 명령이 수정됨에 따라, 직원과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요 예방 방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까지 물리적 거리두기
- ✓ 작업자(호흡기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및 고객/클라이언트/방문객 얼굴 가리개 사용
- ✔ 자주 손 씻기 및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
- ✓ 직원들에게 이와 같은 COVID-19 예방 계획 및 기타 예방 수칙 교육

또한, 직장 내 새로운 감염자를 식별하고, 식별 시 신속하게 개입하며 공공 보건 당국과 협력하여 바이러스의 확산을 중단시키는 적절한 절차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

본 문서는 근로자를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야외 박물관, 야외 갤러리, 식물원 및 기타 야외 전시 공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참고: 본 안내서는 동물원, 놀이공원 또는 실내 갤러리 및 박물관 공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각 유형의 시설은 특정 운영 재개 명령과 지침을 통해서 일부 개편된 방식의 운영 재개 또는 완전한 운영 재개가 허용될 때까지 폐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실내전시회, 기념품 상점, 카페, 레스토랑, 컨벤션 공간 등을 갖춘 야외 박물관과 갤러리는 이러한 장소를 개조하여 운영을 재개하거나 완전 운영 재개가 허용될 때까지 해당 구역을 닫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매장, 레스토랑 등을 위한 적절한 <u>지침</u>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이를 참조해야 합니다.

보건 당국이 추가로 재개를 허용한 카운티 내 실내 박물관 및 갤러리, 동물원 및 수족관은 COVID-19 카운티 로드맵 웹사이트에서 해당 지침을 따를 수 있습니다.

본 지침은 법령이나 규제, 단체 교섭을 비롯하여 직원의 권리 일체를 취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운티 보건 명령을 포함하지 않으며 캘리포니아주 직업보건안전관리국(Californi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Cal/OSHA)의 규정과 같은 일체의 기존 안전 및 보건 관련 규제 요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포괄적인 것이 아닙니다. COVID-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공공 보건 지침 및 주/지역 명령에 대한 변화에 대해 항상 최신 정보를 유지하십시오. Cal/OSHA는 COVID-19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Cal/OSHA 일반 지침 웹페이지에서 더욱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사업체 및 고용주들에 대한 지침 을 통해 추가적인 요건을 제공합니다.

안면 가리개 필수 사용

6월 18일, 캘리포니아주 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CDPH)는 <u>안면 가리개 사용에 관한 지침</u>을 발표했으며, 이는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높은 모든 공공 및 직장 환경에서 대중 및 직원 모두가 안면 가리개를 사용하도록 하는 전반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시민은 직장에서 근무하거나 직장 밖에서 업무 수행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대중 속에서 사람들과 직접 상호 교류하는 경우
- 대중 속의 사람들이 업무 시점에 같은 공간에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중 속의 사람이 방문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음식이 준비되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포장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 시설과 같은 공용 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런 곳을 걸어서 지나가는 경우
- 물리적으로 거리를 둘 수 없는 상황에서 방이나 밀폐된 공간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개인의 가정이나 거주지 제외)
- 승객이 있을 때 대중 교통 또는 보조교통 차량, 택시, 자가용 서비스 또는 승차 공유 차량을 운전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승객이 없을 때 안면 가리개 착용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모든 요건과 이러한 규칙에 대한 예외 사항을 비롯한 전체 세부 사항은 <u>지침</u>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상황에서는 안면 가리개 착용을 강력히 권장하며, 고용주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의무를 다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안면 가리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에게 안면 가리개를 제공하거나 직원에게 합당한 안면 가리개 구매 비용을 환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안면 가리개 착용 예외 규정 중 하나에 부합하는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해야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빈번한 접촉으로 인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하는 직원이 질환으로 인해 이를 착용할 수 없는 경우, 최하단 가장자리 부분에 길게 덮는 천(드레이프)이 부착된 안면 보호대와 같은 비제한적 대체품을 실행 가능한 경우, 그리고 해당 직원의 질환 상태가 이와 같은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제공해야 합니다.

대중에게 개방된 사업체는 <u>CDPH 안면 가리개 관련 지침</u>의 안면 가리개 착용 예외 규정을 인지하여야 하며, 대중 속의 사람이 <u>지침</u>을 준수하는 경우 해당 개인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체는 고객과 손님, 방문자, 직원 중에서 이러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업무 공간별 특정 계획

- 모든 사업장마다 업무 장소별 코로나 19 예방 계획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모든 업무 공간 및 업무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하며, 각 사업장마다 해당 계획을 시행할 담당자를 지정하십시오.
- 영업장 관련 세부 계획에 <u>CDPH 얼굴 가리개 관련 지침</u>을 포함시키시고, 예외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책도 마련하십시오.
- 직원들에게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보건부 연락처를 알아 두십시오.
- 직원 및 직원 대표와 직장별 계획에 관해 교육 및 전달하고, 직원 및 직원 대표가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 해당 사업장에서 계획 및 문서 내용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결함이 확인된 부분은 개선하십시오.
- 모든 COVID-19 관련 질병을 조사하여 작업 관련 요소가 감염 위험에 기여했을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추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계획을 업데이트합니다.
- <u>CDPH 지침</u>에 따라 직장에 감염자가 발생했을 시 필요한 절차와 프로토콜을 시행합니다.
- 감염된 직원과 밀접하게 접촉(6피트 이내 15분 이상 동안)한 사람을 찾아내고 COVID-19 양성 직원을 격리하고 밀접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 아래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COVID-19 발병을 초래하여 일시적으로 직장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원 및 자원봉사자 교육의 주제

- <u>COVID-19</u>에 대한 정보 및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 COVID-19 감염에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기저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
- <u>CDC의 지침</u>을 적용하여 체온 및/또는 증상을 확인하는 등, 가정에서 자가 선별 검사를 실시합니다.
- 출근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
 - 발열, 오한, 숨가쁨, 호흡 곤란, 근육통, 몸살, 두통, 미각 또는 후각 손상 증상이 나타남, 인후통, 코막힘, 콧물, 구역질, 구토, 설사와 같이
 CDC가 발표한 COVID-19 증상이 직원에게 나타난 경우 또는

- o 또는 직원이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았으며 아직 격리 해제되지 않은 경우
- 또는 지난 14일 내에, 직원이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은 사람과 접촉했고 잠재적으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즉, 여전히 격리 상태에 있는 경우).
-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은 직원은 증상이 처음 발현한 이후 10일이 경과하고,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지난 72시간 동안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발열을 겪지 않은 경우에만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았으나 증상이 없는 직원은 첫 번째 COVID-19 검사 양성 판정을 받은 지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만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 흉부의 지속적인 통증 또는 압박을 포함하여 현기증 또는 창백한 입술이나 얼굴 등 증상이 심각해지는 경우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업데이트 및 자세한 내용은 <u>CDC 웹페이지</u>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초 동안 비누로 문지르는 등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는 것의 중요성[또는 직원이 CDC 지침에 따라 개수대 또는 손 세정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 60%의 에탄올(권장) 또는 70%의 이소프로판올(지켜보지 않는 동안에도 아동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둘 경우에만)을 함유한 손 소독제 사용].
- 근무 시간 및 근무 시간 외 물리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아래 물리적 거리두기 항목 참조).
- 다음을 포함한 적절한 안면 가리개 사용:
 - o 안면 가리개는 착용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가 아닙니다.
 - o 안면 가리개는 착용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물리적 거리두기와 잦은 손 씻기 필요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o 안면 가리개는 코와 입을 가리는 것이야 합니다.
 - o 직원은 얼굴 커버를 사용하거나 조절 후 손을 씻거나 소독해야 합니다.
 - o 눈과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o 안면 가리개는 공유해서는 안 되며, 각 교대조 후 세척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 <u>안면 가리개 사용에 대한 CDPH 지침</u>에 포함된 정보로, 본 지침은 안면 가리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상황과 예외 상황을 비롯하여 안면 가리개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주가 채택한 모든 정책과 업무 규칙, 관행을 규정합니다. 또한 교육에는 안면 가리개 착용 예외 규정에 적용되는 사람들에 대한 고용주의 정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시설 내 독립 계약자, 임시직 또는 계약직 직원들이 COVID-19 예방 정책에

대해 적절히 교육을 받고 필수 용품과 PPE를 갖추도록 합니다. 임시직이나 계약직을 공급하는 조직과 사전에 이러한 책임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 유급 휴가 혜택에 대한 정보는 이를 받을 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재정적으로 자택체류가 용이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COVID-19로 인한 병가 및 산재보상금 지원 정부 프로그램을 참조하십시오. 본 프로그램에는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에 따른 직원의 병가 권리를 비롯하여, 캘리포니아주지사의 행정 명령 N-62-20에 의거, 본 명령이 여전히 유효한 시기 동안 산재보상 혜택 및 COVID-19와 업무 간 관련성에 대한 직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별 통제 조치 및 선별 검사

- 교대 근무 시작 시 모든 직원(안내원, 인턴,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체온 및/또는 증상 선별 검사를 제공하십시오. 체온 점검/증상 선별 검사 담당자가 최대한 다른 직원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도록 하십시오.
- 자택에서 자가 선별 검사를 해야 하며 이러한 자가 선별 검사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선별 검사에 대한 적절한 대안인 경우, 직원이 출근하기 전에 해당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상기 직원 교육을 위한 주제 항목에서 설명한 대로 CDC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아프거나 코로나 19 증상을 보이는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및 방문객은 자택에서 마무를 것을 권하십시오.
- 고용주는 필요에 따라 눈 보호 장비, 장갑 등 직원 및 자원봉사자가 모든 필수 보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일회용 장갑 사용이 잦은 손 씻기와 손 소독제 사용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예: 증상 선별 검사를 수행하는 직원이나 많은 사람이 만진 품목을 다루는 직원).
- 야외 박물관 및 갤러리 운영자는 모든 출입구와 전략적으로 눈에 잘 띄는 위치, 예약 접수처에 표지판을 배치하는 등, 일반인들이 얼굴 가리개를 사용해야 하고, 방문 중 물리적인 거리두기 수칙을 실천해야 하며, 자주 비누를 이용해 최소 20초 동안 손을 씻고 손 소독제를 사용하며, 얼굴을 만지지 말아야 하는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방문객에게 미리 얼굴 가리개를 지참해야 한다고 알리고, 가능한 한 얼굴 가리개를 지참하지 않은 방문객이 이용 가능한 얼굴 가리개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청소 및 소독 절차

- 가로대, 난간, 플래카드, 조명 스위치, 문 손잡이 등과 같이 자주 접촉되는 표면을 자주 소독합니다.
-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만든 실외 표면을 청소합니다. <u>CDC 권장</u>에 따라 놀이터, 나무 표면 또는 인도에 소독제를 분사하지 마십시오.
- 실외 전시물의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용하거나 점유해야 하는 실내 작업 구역을 철저히 청소합니다. 여기에는 사무실 및 공용 업무 공간 중사람이 붐비는 공간(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등)과 출입구 공간(난간, 계단, 엘리베이터 버튼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전화기, 태블릿, 양방향 무전기, 기타 작업 용품 또는 사무실 장비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PPE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 이와 같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 반드시 교대 시간 또는 사용한 전후에 적합한 세정제로 표면을 소독해 주시고, 복사기, 팩스, 프린터, 전화기, 키보드, 터미널, ATM 숫자판, 스테이플러, 스테이플러심 제거기, 봉투 오프너, 응접실 내 시설의 표면, 공용 업무 장소, 오디오 및 비디오 장비(마이크, 마이크 지지대, 믹서 보드, TV 모니터, 워키토키) 등은 더 자주 살균 처리 하십시오.
- 펜, 재사용 가능한 지도 등 작업자 및 고객/방문자 사이에 공유되는 도구를 닦고 소독하도록 지시합니다.
- 고객/방문객에게 일회용 지도, 팸플릿, 가이드 등을 제공하고, 가능한 경우 고객/방문객이 개인 전자 기기에서 볼 수 있도록 디지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회용 품목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고객 사용 전후에 재사용 제품을 적절히 소독하십시오.
- 장애인에 대한 운영 의무와 일치하는 경우, 오디오 헤드셋, 유모차, 기타 장비를 고객/방문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매번 사용 후 적절히 소독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장비 제조업체에 문의하여 특히 폼 형태로 된 귀마개와 같은 부드러운 다공성 표면에 적합한 살균 절차를 정하십시오.
- 작업 장소 터미널에 손 소독제 및 살균 물티슈를 포함한 적절한 위생 제품을 비치하십시오.
- 직원과 손님을 위한 위생 시설이 항상 작동하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 비누, 종이 수건 및 손 소독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출입문과 같이 사람이 자주 오가는 구역에 가능한 한 방문객을 위한 손 소독제를 제공합니다.
- 되도록이면 움직임 감지 조명. 자동 비누 디스펜서 및 페이퍼 타올 디스펜서

등의 핸즈 프리 장치를 설치하고 사용을 장려하십시오.

- 소독용 화학물질 선택 시, 고용주는 <u>미국 환경 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승인</u> 목록에 수록되었으며 COVID-19에 대해 사용하도록 승인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제품 사용 설명서를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새로 등장한 바이러스 병원체에 효과적인 것으로 표시된 소독제나 희석된 가정용 표백제 용액(물 1갤런당 5테이블스푼), 표면에 사용하기 적합한 최소 70% 알코올이 포함된 알코올 용액을 사용하십시오. 직원에게 화학물질 위험과 제조업체 지침, 환기 요건, 안전한 사용을 위한 Cal/OSHA 요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세척제 또는 소독제를 사용하는 직원은 제품 사용 설명서에 따라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공공 보건부에서 권장하는 <u>천식에 더 안전한</u> 세정 방법을 따릅니다.
- 직원이 교대 근무 중 청소 방침을 실천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청소 업무는 직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일환으로 근무 시간 내로 배정해야 합니다.
- 작업 공간을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청소할 수 있게 적절하게 시간을 변경하십시오. 필요에 따라서는 제3자인 청소 업체에 외주 용역을 주는 방식을 이용하면 청소에 대해 충족시켜야 할 요건이 늘어난 상황에 도움이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

- 직원과 고객/방문객, 대기하는 고객 간에 최소 6피트 이상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보장하는 조치를 이행합니다. 여기에는 물리적인 가림막, 플렉시글라스 장벽 또는 시각적인 표시 사용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예: 직원/고객이 서야 할 위치를 가리키는 바닥 표시 또는 표지판).
- 되도록이면 야외 전시관, 갤러리, 실내 직원 업무 공간 출입 시 이용하는 입구와 출구를 다르게 지정하여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치는 경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가능한 경우, 도보 이동용 복도와 통로를 설정하여 직원과 손님이 서로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혼잡한 구역과 혼잡해지기 쉬운 구역에 직원을 배치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피하도록 고객을 안내하게 합니다. 최대 수용 인원 규정을 조정하여 야외 박물과 갤러리의 인원 수를 적절히 제한하여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원합니다.
- 시간별 및/또는 사전 예약 발권 시스템을 구현하여 고객 방문에 시차를 확보하고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방문객 그룹 크기를 6명 이하로 제한합니다. 한 동일 가정의 사람들은 6피트 간격으로 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 다른 가정의 사람들을 동일한 투어 그룹에 결합하는 투어를 중단합니다. 투어 가이드는 고객/방문자로부터 최소 6피트 이상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좌석 구역을 재배열하거나 고객/방문자 간 최소 6피트 정도의 물리적 거리를 허용하도록 좌석을 제거합니다. 고객/방문객에게 자신의 그룹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서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도록 고정된 공용 좌석(벤치 등)에 표지판을 게시합니다.
- 고객 또는 방문객이 모일 수 있으며 물리적 접촉이 필요한 인터랙티브 전시회, 놀이터 등을 폐쇄합니다.
- 고객 및 다른 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게 업무 방법 변경을 요청하는 직원, 안내원, 인턴 및 자원봉사 직원의 제안을 수락하는 쪽을 고려하십시오(예: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창고 관리로 변경 또는 원격 근무를 통해 행정적으로 필요한 업무 관리).
-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 관행을 활용하여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사무실 내 인원 수를 제한합니다. 일정 조정(예: 시작/종료 시간에 시간차 두기), 현장 보고 일자를 교대로 배정하기, 작업 공간 출근 복귀를 단계별로 시행하기, 또는 되도록이면 재택근무 계속하기 등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사무실 공간, 작업 공간, 체크아웃 카운터 등을 재구성하여 작업 공간에 있는 동안 직원들이 최소 6피트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 휴게실을 재구성, 제한 또는 폐쇄하고 물리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대체 휴게실을 조성합니다. 직원들이 화장실과 복도와 같은 사람이 붐비는 공간에 가는 것을 자제하게 하십시오. 동시에 엘리베이터에 타는 직원의 수를 제한합니다.
- 직원 및 방문객이 화장실과 복도와 같은 사람이 붐비는 공간에 가는 것을 자제하게 하십시오.
- 시간차 교대 근무 직원은 임금 및 시간 규정을 준수하여 물리적 거리두기 절차를 유지합니다.
- 구내에서 이동할 때는 차량을 공유하지 마십시오.
- 업무 현장에 물품 배달할 경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접촉되지 않게 합니다.
- 다른 사람의 펜과 클립보드를 만지지 마십시오. 되도록이면 선반과 게시판 같은 운반 보조 용품을 설치하여 사람 사이에 물건을 직접 전달하는 일을 줄이십시오.
- 주차장을 재설계하여 모임 장소를 제한하고 적절한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예: 모든 기타 공간, 비접촉식 결제 등).

1취약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 추가적인 준수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무용 업무 공간은 반드시모든 Cal/OSHA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표준의 지침을 비롯하여 <u>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u> 및 <u>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부(CDPH)</u>의 지침을 준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용주는 이러한 지침의 변경 사항에 따라 운영 방침을 변경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